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303 발의연월일: 2021. 8. 30.

발 의 자:김경협·남인순·최종윤

장철민 · 김성주 · 홍영표

이용선 • 아수잔비 • 홍기원

장경태 · 김두관 · 윤미향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, "19세 이상" 일정 수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「공직선거법」 개정(2020. 1. 14.)으로 선거권 연령이 "19세이상"에서 "18세 이상"으로 하향 조정됨.

이에 감사청구권 연령도 현행 "19세 이상"에서 "18세 이상"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7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 본문 중 "19세"를 "18세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감사청구에 관한 적용례)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2조(감사청구권) ① <u>19세</u> 이상	제72조(감사청구권) ① <u>18세</u>
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	
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	
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	
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	
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	
있다. 다만, 국회·법원·헌법재판	
소·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	
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	
장·대법원장·헌법재판소장·중앙	
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	
감사원장(이하 "당해 기관의	
장"이라 한다)에게 감사를 청	
구하여야 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